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22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10.28)상정

제3차 총무위원회(2004.11. 1)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장일룡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의 전국적인 통일을 통하여 시민혼란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동절기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 까지를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함 (안 제13조 제1항)

※ 동절기 :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달 까지

3. 관계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 제59조(기타 복무사항 조례에 위임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조례 개정건은

○ 주 5일제의 시행목적이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토요일 휴무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3년이래 41여년간 시행되어온 동절기 근무시간을 개정하게 되

면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 고유가시대 에너지 낭비로 인한 예산
과다지출과 동절기 일몰 이후는 민원인의 방문이 극히 미비하여
업무의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근무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
하므로써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입법권 제한등의
문제를 야기하고 있음

- 기존 근무시간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근무시간을 개정한 부산시
행정구역내 소재하는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무
시간이 상이하게 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일반제증명
민원등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므로 1시간 연장근무는
실익이 적다고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